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남포~간치)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

2014. 3



목 차

제1장 주민의견 수렴	1
1.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초안) 공람	1
1.2 주민설명회 개최	1
1.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7
제2장 의견 수렴결과 문서	25
2.1 환경부	25
2.2 충청남도	31
2.3 보령시	41

제1장 주민의견 수렴

1.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초안) 공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공람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18호
 - 중앙일간지 : 문화일보(2013년 10월 30일)
 - 지방일간지 : 중도일보(2013년 10월 30일)
- 공람기간 : 2013년 10월 30일 ~ 2013년 11월 21일
- 공람장소 : 보령시 도로교통과, 청소면, 주포면, 남포면, 웅천읍, 주산면사무소
- 의견제출기간 : 2013년 10월 30일 ~ 2013년 11월 29일

1.2 주민설명회 개최

가. 신문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 신문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
- 개최일시 및 장소

시·군	일시	장소
보령시	2013. 11. 8(금), 15:00	보령시청 대회의실(지하)

- 참석자 : 약 30명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관련 신문공고



문화일보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협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나 사업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부여시
다 사업구분 : 노선연장 : 21.09km
•신항~후포 구간 : 홍남 홍성군 홍성읍 하계리~부영시 후포면 홍성리
•보령~간치 구간 : 홍남 보령시 남포면 통곡리~보령시 주안면 교동리
라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마 사업시행처 : 국토교통부(국립한국철도시설공단)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0월 30일 ~ 2013년 11월 21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홍성군 : 건설교통과, 홍성읍, 구항면, 경안면, 신안면사무소
•부영시 : 도로교통과, 홍성면, 후포면, 남포면, 통곡면, 주안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시군	일시	장소
홍성군	2013. 11. 08(수) 10:00	홍성군청 2층
부영시	2013. 11. 21(수) 11:00	부영시청 2층(2013)

4. 주민피견 제출
가 대 : 3 : 1(당사자외로 양해를 받게 하는 3명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간 : 공람일로부터 7일 이내(2013년 11월 29일 18:00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400 2차 공람일자로 서신제출
※ 2차 서신은 4월은 국토교통부(☎044-201-2100) 및 한국철도시설공단(☎044-007-3373)으로 편지봉투가 바람직하다.



中 都 日 報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협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3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나 사업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부여시
다 사업구분 : 노선연장 : 21.09km
•신항~후포 구간 : 홍남 홍성군 홍성읍 하계리~부영시 후포면 홍성리
•보령~간치 구간 : 홍남 보령시 남포면 통곡리~보령시 주안면 교동리
라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마 사업시행처 : 국토교통부(국립한국철도시설공단)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0월 30일 ~ 2013년 11월 21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홍성군 : 건설교통과, 홍성읍, 구항면, 경안면, 신안면사무소
•부영시 : 도로교통과, 홍성면, 후포면, 남포면, 통곡면, 주안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시군	일시	장소
홍성군	2013. 11. 08(수) 10:00	홍성군청 2층
부영시	2013. 11. 21(수) 11:00	부영시청 2층(2013)

4. 주민피견 제출
가 대 : 3 : 1(당사자외로 양해를 받게 하는 3명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간 : 공람일로부터 7일 이내(2013년 11월 29일 18:00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400 2차 공람일자로 서신제출
※ 2차 서신은 4월은 국토교통부(☎044-201-2100) 및 한국철도시설공단(☎044-007-3373)으로 편지봉투가 바람직하다.

다. 설명회 관련 사진



라. 설명회 참석자 명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협의)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사업명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설명회일시	2013년 11월 08일 15:00	설명회장소	보령시청 대회의실(지하)	
일련 번호	참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이영철			
2	김한진			
3	유자옥			
4	김광행			
5	이주희			
6	최동승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사업명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설명회일시	2013년 11월 08일 15:00	설명회장소	보령시청 대회의실(지하)	
일련 번호	참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임정식			
2	이강우			
3	김오영			
4	이정순			
5	김광훈			
6	강정희			
7	한현우			
8				
9				
10				
11				
12				
13				
14				
15				
1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협의)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사업명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설명회일시	2013년 11월 08일 15:00	설명회장소	보령시청 대회의실(지하)	
일련 번호	참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임시열			
2	임춘봉			
3	김동철			
4	홍성호			
5	최진래			
6	이민준			
7	이정민			
8	이우익			
9	김진봉			
10				
11				
12				
13				
14				
15				
16				

마.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

구분	주민의견	답변내용
보령시	<p>◦임정순</p> <p>-사업기간이 너무 길며, 사업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른 사전 대비(편입시 이주 등 대책 수립)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p> <p>-보상은 기준시가로 하시는지, 시가로 하시는지?</p> <p>-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방음시설을 신경써서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p> <p>-기상이변이 빈번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소하천 교량구간 고려해주시오.</p> <p>-전파장해 관련 검토도 부탁드립니다.</p> <p>-간치역은 없어지는 건가요?</p>	<p>◦사업기간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p> <p>◦보상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p> <p>◦소음방음시설은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는 사항이며, 설계단계부터 별도로 평가를 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p> <p>◦보령시 하천정비계획 등 반영하여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p> <p>◦계획노선 200m 이내의 구간에 대해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p> <p>◦간치역의 경우 계획에 따라 없어집니다.</p>
	<p>◦최종승</p> <p>-교량 및 성토구간이 어느정도 되는지?</p> <p>-성토로 계획된다면 지역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p>	<p>◦구조물계획은 현재 보령시와 협의중입니다.</p> <p>◦보령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1.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1.3.1 환경부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p>1.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 일원에 연장 31.98km인 장항선 북선전철 개량사업으로, 본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반영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당초 초안에는 31.98km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신성~주포, 남포~간치 구간을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진행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구간은 자연석면 발생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석면피해 우려의식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홍성군)는 완벽한 대책이 없을 경우 석면 분포지역은 노선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주포구간은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석면분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석면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후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야 함 -남포~간치구간도 계획노선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한 자연석면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성~주포구간은 폐석면광산이 분포하는바, 자연발생석면 전문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 등)의 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p.317 ~319 p.637 ~666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과 형식 등을 갖추어 작성하되, 그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그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첨부함 	-
	II.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자연석면 발생지역(광천읍 등) 주변 노선 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천읍 등 자연석면 발생지역(우려 지역, 석면광산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자연석면 발생지역을 우회하거나 주거지 등과 최대한 이격될 수 있는 대안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천읍이 포함된 신성~주포구 간에 대해 자연석면 발생지역을 우회하거나 주거지 등과 최대한 이격될 수 있는 대안노선은 검토 중에 있음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p.317 ~319 p.637 ~666
	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노선 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통과 노선에 대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제시하고, 계획노선이 부득이 1등급 권역을 통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대안 노선별 생태적 관점에서 차별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보전방안도 일반적인 토목공사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시정부에 일부 분포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대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착터널로 계획하였음 	p.387 ~389, 397,404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p>다. 계획노선 통과에 따른 법적보호종 서식여부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상에 맹꽁이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정밀조사하여 서식지 분포 도면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노선 변경 등 대안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에 제시하였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우기시) 추가조사를 수행하겠음 	p.394 ~396
	<p>2. 평가항목·평가서 작성</p> <p>가.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평가항목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대기질(비산먼지), 지형·지질, 토양, 수질, 위생·공중보건 분야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비산먼지), 지형·지질, 토양, 수질, 위생·공중보건 분야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음 	-
	<p>나. 자연석면 관련 평가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 검토협의 강화방안」(개정 '13.1.1)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되, 평가서는 별도의 “장” 또는 “절”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평가서 작성 시 대기질(비산먼지), 지형·지질, 위생·공중보건 분야 등 석면과 관련되는 평가항목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사업구간인 남포~간치구간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상기 중점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항목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317 ~319 p.637 ~666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p>환경부</p>	<p>3. 입지의 타당성</p> <p>가. 자연석면 발생지역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면 발생지역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현재 광천읍 일원에 석면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석면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조사(시료 채취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p>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천읍이 포함된 신성~주포 구간은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및 저감방안을 수립후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진행하겠음 	<p>p.317 ~319 p.637 ~6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증 -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석면발생 실태조사 결과 및 영향예측·저감방안에 대하여 대학의 석면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검증(전문가 자문회의 등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p>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p>p.317 ~319 p.637 ~6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면 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시 유의사항 등 -공사 시 자연발생석면의 비산이 우려되는 지역은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조) 등에 준하는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p>해당사항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p>p.317 ~319 p.637 ~666</p>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p>-운영 시 절개면 등에 석면이 포함된 암석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풍화, 바람 등에 의한 석면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공사 중에 석면을 포함하는 암석, 토양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조) 등에 준하는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굴착공사 등에 따른 석면 비산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굴착 등의 공사는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자체 수립·시행하여야 함</p> <p>-계획노선과 접촉하는 석면광산지역에 대하여 심도 0.1m 이상 굴착 시 중간토(0.1~0.4m)·심토(0.4~1m)에 대한 토양 중 석면함유량을 조사하여 비산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p>해당사항 없음</p> <p>◦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p> <p>◦ 광천읍이 포함된 신성~주포 구간은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및 저감방안을 수립후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진행하겠음</p>	p.317 ~319 p.637 ~666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p>-폐광산 주변 토양의 석면함유량 조사자료(환경부, 산업부 등) 등을 참고하여 석면검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굴착 등의 공사시행 시 대기중 석면 비산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함</p> <p>-불가피하게 굴착하는 토양의 운송 거리는 최소화하고, 굴착·운반·보관 등의 과정별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p> <p>-자연석면의 분포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굴착, 채취작업의 영향 최소화, 처리방법, 폐기장소 선정, 폐기장소에서 처리방안 등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폐광산 등 지하 채굴이 진행되었던 지역은 지하 갱내도 자료 등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사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반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p> <p>-환경부에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 중이므로, 충청지역 광역지질도 완성 후, 계획노선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비교하여 추가 석면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p>	<p>해당사항 없음</p> <p>◦ 남포~간치 구간 주변 15km 이내에는 폐석면광산이 분포하지 않음</p>	p.317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환경부	<p>-자연석면 발생지역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이 아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p> <p>*조치기준 내 야적기준 등을 적절히 준수하고,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을 위해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p> <p>○ 관계 법령 준수</p> <p>-시행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등 석면안전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p> <p>○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사전협의 필요</p> <p>-광해공단의 토양복원사업 필지(23,682㎡ 중 11,532㎡) 외의 지역도 석면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질도 등을 통해 사전 검토가 필요함</p> <p>-철도건설사업보다 광해공단의 토양복원사업이 앞서 완료('16년 완료 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해공단과 상호 협의가 필요함</p>	<p>해당사항 없음</p> <p>○ 남포~간치 구간 주변 15km 이내에는 폐석면광산이 분포하지 않음</p>	p.317
	<p>나. 토지이용</p> <p>○ 마을 단절에 따른 대책강구</p> <p>-철도건설에 따라 마을이 단절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도면에 제시하고, 각 지점별 현황과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반영</p> <p>○ 본 사업으로 인한 마을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교량 등 설치계획을 검토하였음</p>	p.272

구분	제출의견	반영내용	비고
환경부	<p>다. 동·식물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 훼손 최소화 대책 - 녹지자연도 7등급지가 전체 노선면적의 20.9%에 해당되므로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조사지역의 능선(생태)축(소능선축 포함)이 표시된 계획노선 도면(수계 표시, 지상부/지하부 노선, 교량, 역 등을 표시)과 중첩 도면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391 ~392, 398 ~399
	<p>라. 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시 소음영향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 계획노선은 정온시설에 접근하는 노선으로서 운영 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노선부근의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결과를 검토하여 소음목표기준을 만족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478 ~487, 508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벽의 하중(안전성) 검토 - 운영 시 교량부 등에 설치예정인 방음벽의 하중(풍하중, 자체하중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제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벽 하중(안정성)은 환경에서 결정된 방음벽 높이에 맞게 실시설계에서 검토되었음 	p. 508 ~520

1.3.2 충청남도 검토의견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계획(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에 제시된 예정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지역으로, -노선 결정 전 정밀한 지형, 지질조사 등 석면 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석면광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피하여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 되어야 함.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후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천읍이 포함된 신성~주포 구간은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및 저감방안을 수립후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진행하겠음 	p.317 ~319 p.637 ~666
	<p>○ 대기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예측결과를 미제시 하였으며, 특히 계획노선중 석면 분포지역의 석면 비산 영향예측 자료 및 구체적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함.(p118~126)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에 따른 예측결과를 제시하였음 	p.149 ~168
	<p>○ 지형지질과 경관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절·성토공사가 예상됨에 따른 사토(터널공사 등)의 발생 및 이의 처리대책이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함.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토발생에 따른 처리계획을 제시하였음 	p.339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토구간이 주변지형과 경관상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계획 및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토사면의 녹화 및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음 	p.336 ~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계획시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 공정에 의한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경관적,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사이동 및 적치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토사이동 및 적치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을 수립하였음 	p.335
	○ 수질 및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구간중 복원되지 않은 폐광지역이 노선으로 선정되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수자원 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포~간치 구간 주변 10km 이내에는 폐석면광산이 분포하지 않음 	p.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 폐수의 발생에 따른 대책과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터널폐수 처리대책 및 지하수 유출방지 대책을 제시하였음 	p.246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공사 구간중 하천, 저수지 횡단 공사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하상에 설치되는 교량은 공사시 오탁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및 저수지 횡단 교량에 대해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 	p.242 ~244
	○ 동·식물상,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구간 또는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존재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피해 저감대책 또는 대체 서식지의 조성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우기시) 추가조사를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p.394 ~396, 402 ~403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에 교량(교각)을 설치할 경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따른 서식지 교란행위, 즉, 하상의 물리적 교란 행위와 탁도 유발과정에서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p.242 ~244, 397, 403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생태통로 진입부 등은 주변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 식물 위주로 설치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생수목 이식·관리 계획 및 야생동물유도울타리, 탈출용경사로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음 	p.400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생태이동통로에 이식하는 계획 수립·시행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호한 수목에 대한 이식수목 계획을 수립하였음 	p.398 ~399
	<p>○ 소음·진동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철도노선 사업예정지 인접지역 82개 지역(이격거리 2~288m) 정온시설에서 공사장비 등 투입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도가 61개 지역에서 소음규제기준(65dB)을 초과(최고 97.5dB)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되며, 소음방지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37개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함. 진동 또한 32개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특단의 추가 저감대책(이전대책,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p 398~446)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p.488 ~507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에도 73개소의 소음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최신 공법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p 448~4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계획노선 주변 소음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p. 508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반 발파시 발파풍압에 대해 전색(塡塞)효과가 좋은 전색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例 : 몰탈, 백시멘트, 자연사 쇄석혼합물, 에폭시수지 등)하고, 또한 발파 진동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수인한도 : 소음 65dB(A), 진동65dB(V) - 가축 : 소음 60dB(A), 진동57dB(V), 진동속도 0.02cm/sec - 건축물(예민한) : 진동속도 0.3cm/s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발파구간에 대해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발파소음의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여 10dB 완화된 75dB(A)을 적용함 	p. 474 ~477, 504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 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겠음 	-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서에 제시된 철도건설 예정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역으로 예측되는 바, 정확한 지질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역 유무를 확인하고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17조 및 18조 의거 관리지역에 준용하여 석면비산방지 계획서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검토가 필요함(현재 환경부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광역조사 단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p.317 ~319 p.637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대흥석면광산 2km이내 주민 중 43명이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피해자로 철도노선 변경으로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하나 석면비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불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바 노선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남포~간치 구간 주변 10km 이내에는 폐석면광산이 분포하지 않음 	p.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안 선정 사유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 석면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불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본 남포~간치 구간은 자연발생 석면 전문가 조사 결과 발생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p.317 ~319 p.637 ~666

구 분	제 출 의 건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산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을 수립시 「산지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산지의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한 별표6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특히 산지에서 흙깎기·쌓기에 의해 복구하여야 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토공계획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깎기고 10m이상 발생구간은 6개소, 쌓기고 7m이상 발생구간은 10개소로 계획되었으며,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터널 및 교량등의 시설물을 계획하였고,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토공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p.320 ~321 p.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 성공지 및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이 편입될 경우 우회노선 선정하거나 터널 또는 교량으로 계획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 편입될 경우 우회노선 선정하거나 터널 또는 교량으로 계획하겠음 	p.352 ~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이 양호한 소나무 등 입목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시 최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수형이 양호한 수목에 대해 이식 계획을 수립하였음 	p.398 ~3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향후 실시계획 승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되어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역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지역에 설치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향후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광천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분석, 청소역 폐지에 따른 관리방안도 함께 협의하시기 바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노선과 달리 금회 협의 노선은 광천읍 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광천읍 생활권이 양분되는 문제점 없는지 분석 검토가 필요함.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주포 구간은 자연발생석면조사후 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건설 일부지역에 자연함유 석면이 확인되고 있는바 공사중, 운영중 비산 등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주포 구간은 자연발생석면조사후 별도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웅천역 신설지역 주변에는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2개소(0.301km²)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연계성 및 저촉여부는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남포저수지를 교량으로 횡단할 시 경관적인 문제가 없는 지 종합 검토 하여야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웅천역 신설지역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저촉여부는 보령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교량형식 및 교량색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남포저수지를 교량설치로 인한 경관변화를 최소화하였음 	p.538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주택 등 주거지역 통과구간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 공간(녹지 및 수림대 조성 등) 확보 또는 방음벽 설치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p. 508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 철도역사의 배치, 규모, 역사 통과 방법(교량 또는 토공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철도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기존 도로 이용과 주민의 농경지 (임야 포함)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으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p. 272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하천과 저축 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 하천점용세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과 저축시 별도 협의를 실시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설치로 인한 관리용 도로(제방)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설치로 인한 도로(제방)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음 	p.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 제30조(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해당시군 하천관련부서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법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허가를 득 하겠음 	-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부지 내 일부 지점(홍성 청광리 소반유물산포지 등 22개소, 488,113㎡, 대상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문화재 시발굴 조사시 해당의견을 반영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부지 내 일부 지점(보령 장곡리·보령 마강리 마강들·보령 대창리 표본조사 필요지역 등 3개소, 63,281㎡, 대상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참조)은 유적의 현황파악 등을 위한 표 본 조 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미확인된 경우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문화재 시발굴 조사시 해당의견을 반영하겠음 	-

구 분	제 출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충청남도 (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한 보령 청소역 등 지정문화재는 사업시행 이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현상변경 허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유구 훼손 및 도난방지 등 관련조치 후 우리 청에 신고토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문화재 시발굴 조사시 해당의견을 반영하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것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문화재 시발굴 조사시 해당의견을 반영하겠음 	-

1.3.3 보령시 검토의견

- 별도의견 없음

1.3.4 주민의견 제출서

- 별도의견 없음

제2장 의견 수렴결과 문서

2.1 환경부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검토의견 통보

1. 귀 부 철도건설과-2023(2013.10.29)의 관련입니다.
2.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재 등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검토의견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국토통부장관(철도건설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기관 오세창 과장 권영 2013. 12. 11.
박찬갑

접수자

시행 국토통부평가과-3924 (2013. 12. 11.) 접수 철도건설과-2465 (2013. 12. 11.)

부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토통부평가 / http://www.me.go.kr
과

전화번호 044-201-7291 팩스번호 044-201-7304 / osj5000@me.go.kr / 비공개(5)

개방·공유·소통 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업)의 초안 검토의견

I. 총괄의견

1. 본 계획은 충남 홍성군 및 보령시 일원에 연장 31.98km인 장항선 복선 전철 개량사업으로, 본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반영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본 사업구간은 자연석면 발생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석면피해 우려의식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홍성군)는 완벽한 대책이 없을 경우 석면 분포지역은 노선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신성~주포구간은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석면분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석면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후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야 함
 - 남포~간치구간도 계획노선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충분한 자연석면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과 형식 등을 갖추어 작성하되, 그 근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II.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자연석면 발생지역(광천읍 등) 주변 노선 대안 검토

- 광천읍 등 자연석면 발생지역(우려지역, 석면광산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자연석면 발생지역을 우회하거나 주거지 등과 최대한 이격될 수 있는 대안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노선 대안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통과 노선에 대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비교·제시하고, 계획노선이 부득이 1등급 권역을 통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대안 노선별 생태적 관점에서 차별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보전 방안도 일반적인 토목공사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다. 계획노선 통과에 따른 법적보호종 서식여부 조사

- 계획노선 상에 맹꽁이 등 법적 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정밀조사하여 서식지 분포 도면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노선 변경 등 대안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2. 평가항목·평가서 작성

가.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평가항목 설정

-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대기질(비산먼지), 지형·지질, 토양, 수질, 위생·공중보건 분야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나. 자연석면 관련 평가서 작성

- 자연석면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 검토 협의 강화방안」(개정 '13.1.1)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되, 평가서는 별도의 “장” 또는 “절”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시 대기질(비산먼지), 지형·지질, 위생·공중보건 분야 등 석면과 관련되는 평가항목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석면 발생지역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 자연석면 발생지역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 현재 광전을 일원에 석면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석면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조사(시료채취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증

- 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석면발생 실태조사 결과 및 영향예측·저감방안에 대하여 대학의 석면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검증(전문가 자문회의 등 포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자연석면 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시 유의사항 등

- 공사 시 자연발생석면의 비산이 우려되는 지역은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조) 등에 준하는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 시 절개면 등에 석면이 포함된 암석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풍화, 바람 등에 의한 석면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중에 석면을 포함하는 암석, 토양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조) 등에 준하는 석면비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굴착공사 등에 따른 석면 비산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굴착 등의 공사는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자체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획노선과 겹촉하는 석면광산지역에 대하여 심도 0.1m 이상 굴착 시 중간도(0.1-0.4m)·심토(0.4-1m)에 대한 토양 중 석면함유량을 조사하여 비산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폐광산 주변 토양의 석면함유량 조사자료(환경부, 산업부 등) 등을 참고하여 석면검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굴착 등의 공사시행 시 대기중 석면 비산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굴착하는 토양의 운송거리는 최소화하고, 굴착·운반·보관 등의 과정별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자연석면의 분포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굴착, 채취작업의 영향 최소화, 처리방법, 폐기장소 선정, 폐기장소에서 처리방안 등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폐광산 등 지하 채굴이 진행되었던 지역은 지하 갱내도 자료 등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반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부에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 중이므로, 충청지역 광역지질도 완성 후, 계획노선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비교하여 추가 석면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함
 - 자연석면 발생지역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이 아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조치기준 내 아적기준 등을 적절히 준수하고,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을 위해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관계 법령 준수**
- 시행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등 석면안전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사전협의 필요**

- 광해공단의 토양복원사업 필지(23,682㎡ 중 11,532㎡) 외의 지역도 석면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질도 등을 통해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철도건설사업보다 광해공단의 토양복원사업이 앞서 완료('16년 완료 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해공단과 상호 협의가 필요함

나. 토지이용

○ 마을 단절에 따른 대책강구

- 철도건설에 따라 마을이 단절되는 지역을 조사하여 도면에 제시하고, 각 지점별 현황과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다. 동·식물상

○ 식생 훼손 최소화 대책

- 녹지자연도 7등급지가 전체 노선면적의 20.9%에 해당되므로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 조사지역의 능선(생태)축(소능선축 포함)이 표시된 계획노선 도면(수계 표시, 지상부/지하부 노선, 교량, 역 등을 표시)과 중첩 도면

라. 소음·진동

○ 운영 시 소음영향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 계획노선은 정온시설에 접근하는 노선으로서 운영 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노선부근의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결과를 검토하여 소음목표기준을 만족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방음벽의 하중(안전성) 검토

- 운영 시 교량부 등에 설치예정인 방음벽의 하중(풍하중, 자체하중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제 설치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2 충청남도

2013 새출발 행복한 변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충청남도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장)
(경유)

제목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협의) 검토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2023(20143.10.29)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호와 관련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협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협의) 검토의견서 1부, 끝.

충청남도



주무관	김홍수	환경조사평가 팀장	박상환	환경정책과장 신과 2013. 12. 2. 조경연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563	(2013. 12. 2.)	접수	철도건설과-2342 (2013. 12. 2.)
우	350-831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 http://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4416	팩스번호	041-635-3064	/ kjs1252@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부3.0, 국민과의 약속,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높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재협의) 검토 의견서

I.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일원
- 규 모 : L = 31.98km(홍성 11.59km, 보령시 20.39km)
- 사업기간 : 2010~2016년
- 시 행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II. 검토의견

- 본 사업계획(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에 제시된 예정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 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 석면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지역으로,
 - 노선 결정 전 정밀한 지형, 지질조사 등 석면 분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석면광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피하여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 되어야 함.
 -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후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대기분야
 -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예측결과를 미제시 하였으며, 특히 계획노선중 석면 분포지역의 석면 비산 영향예측 자료 및 구체적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함.(p118~126)

○ 지형지질과 경관분야

- 대규모 잘성토공사가 예상됨에 따른 사토(터널공사 등)의 발생 및 이의 처리대책이 상세하게 수립되어야 함.
- 성토구간이 주변지형과 경관상 조화될 수 있도록 녹화계획 및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계획노선 계획시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잘성토 공정에 의한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경관적,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사이동 및 적치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비산 먼지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수질 및 지하수

- 공사구간중 복원되지 않은 폐광지역이 노선으로 선정되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수자원 오염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 터널 폐수의 발생에 따른 대책과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교량공사 구간중 하천, 저수지 횡단 공사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하상에 설치되는 교량은 공사시 오탁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동·식물상/ 생태계

- 사업구간 또는 주변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존재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피해 저감대책 또는 대체 서식지의 조성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
- 하천에 교량(교각)을 설치할 경우 하천생태계의 훼손에 따른 서식지 교란행위, 즉, 하상의 물리적 교란행위와 탁도 유발과정에서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수로박스 및 횡배수관은 야생동물이 이동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생태통로 진입부 등은 주변 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식물 위주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생태이동 통로에 이식하는 계획 수립·시행

○ 소음·진동분야

- 공사시 철도노선 사업예정지 인접지역 82개 지역(이격거리 2~288m) 정온시설에서 공사장비 등 투입장비에 의한 예상 소음도가 61개 지역에서 소음규제기준(65dB)을 초과(최고 97.5dB)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 되며, 소음방지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37개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 함. 진동 또한 32개 지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특단의 추가 저감대책(이전대책,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작업시간 조정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함.(p 398~446)
- 운영시에도 73개소의 소음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최신품법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규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p 448~458)
- 암반 발파시 발파풍압에 대해 전색(填塞)효과가 좋은 전색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例 : 물탈, 백시멘트, 자연사 쇄석혼합물, 에폭시수지 등)하고, 또한 발파 진동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하여야 함.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수인한도 : 소음 65dB(A), 진동 65dB(V)
 - 가축 : 소음 60dB(A), 진동 57dB(V), 진동속도 0.02cm/sec
 - 건축물(예민한) : 진동속도 0.3cm/sec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관리과】

- 평가서에 제시된 철도건설 예정지역은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예측되는 바, 정확한 지질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유무를 확인하고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17조 및 18조 의거 관리지역에 준용하여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검토가 필요함(현재 환경부에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광역조사 단계임).
- 현재 대흥석면광산 2km이내 주민 중 43명이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피해자로 철도노선 변경으로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하나 석면비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불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바 노선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최종안 선정 사유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 석면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불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산림녹지과】

- 실시계획을 수립시 「산지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산지의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한

별표6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특히 산지에서 흙막기·쌓기에 의해 복구하여야 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토공계획을 재검토하여 반영 하여야함.

- 조림 성공지 및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이 편입될 경우 우회노선 선정하거나 터널 또는 교량으로 계획 하여야함.
- 수형이 양호한 소나무 등 임목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시 최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
-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는 본 협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향후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협의 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함.

【건설정책과】

- 철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되어야 함.
- 금회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철도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향후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광천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분석, 청소역 폐지에 따른 관리방안도 함께 협의하시기 바람.
- 기본계획 노선과 달리 금회 협의 노선은 광천읍 취락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광천읍 생활권이 양분되는 문제점 없는지 분석 검토가 필요함.

- 철도건설 일부지역에 자연함유 석면이 확인되고 있는바 공사중, 운영중 비산 등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웅천역 신설지역 주변에는 2020년 보령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2개소(0.301㎢)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연계성 및 지속여부는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남포저수지를 교량으로 횡단할 시 경관적인 문제가 없는 지 종합 검토 하여야함.
- 또한 주택 등 주거지역 통과구간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공간(녹지 및 수림대 조성 등) 확보 또는 방음벽 설치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람
-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향후 역세권 개발에 대비한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 철도역사의 배치, 규모, 역사 통과 방법(교량 또는 토공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본 철도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기존 도로 이용과 주민의 농경지 (임야 포함)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치수방제과】

- 지방하천과 저속 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 하천점용세 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함
- 교량설치로 인한 관리용 도로(제방)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하천법 제30조(하천공사의 시행허가),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해당시군 하천관련부서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함.

【문화제과】

“문화제청 문화재보존대책 별첨”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문 화 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항선 개량 2단계 개설사업부지(변경부지)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3745호(2011.04.01.) 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 보령시 및 홍성군 일원 장항선 개량 2단계 개설사업과 관련,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된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에 반영(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정부지 내 일부 지점(홍성 청광리 소반유물산포지 등 22개소, 488,113㎡, 대상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업예정부지 내 일부 지점(보령 장곡리·보령 마강리 마강들·보령 대창리 표본조사 필요지역 등 3개소, 63,281㎡, 대상범위는 지표조사보고서 참조)은 유적의 현황파악 등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할 것)

○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미확인된 경우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다.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한 보령 청소역 등 지정문화재는 사업시행 이전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현상변경 허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유구 훼손 및 도난방지 등 관련 조치 후 우리 청에 신고토록 할 것

4.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 모형시장(문화공보실장), 충청연구원(문화공보과장), 한국형도시설공단이시장

학예연구

★행정사

발굴제도 신청 2013. 9. 16.

사 변영환

무관 휴가

과장 채수희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9089

(2013. 9. 17.)

접수 문화재과-2051

(2013. 9. 17.)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신동, 정부대전청사)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77

팩스번호 042-481-4959


/ drymoon@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높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3 보령시

『도로영주소 사용을 생활화합니다.』




보령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과장)
(경유)
제목 장항선개량 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결과 의견 제출

1. 철도건설과 - 2024 (2013. 10. 29)호와 관련됩니다.
2. 장항선개량 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서식 생략 제출합니다. 끝.

보령시



지방행정주사 박의석	교통행정담당 최광덕	도로교통과장 신영 2013. 12. 6. 이상현
협조자		
시행 도로교통과-60357	(2013. 12. 6.)	접수 철도건설과-2416 (2013. 12. 6.)
우 355-701 충청남도 보령시 상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 www.boryeong.chungnam.kr		
전화번호 041-930-3365 팩스번호 041-930-3784 / euseki@korea.kr / 대국민 공개		

『주소 하나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 이제 도로영주소입니다.』